

(비공식 번역본)

투자위원회 고시
제Sor.8/2564호

전기차 제조에 관한 투자촉진 정책의 개정

투자 촉진 정책과 기준에 관한 2014년 12월 3일자 투자위원회 고시 제2/2557호와 관련하여, 국가 전략에 따른 태국의 목표 산업인 전기차 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위원회는 불기 2520년(1977년) 투자유치법 제16항, 제18항, 제31항 및 제31/1항에 의거하여 다음의 내용을 고시하는 바이다.

1. 투자 촉진 정책과 기준에 관한 2014년 12월 3일자 투자위원회 고시 제2/2557호에 첨부된 촉진 활동 항목에서 4.24, 4.26, 4.27의 촉진 활동은 폐지하며, 2021년 1월 13일자 투자위원회 고시 제3/2564호에 개정된 바와 같이 다음의 활동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촉진활동을 변경한다.

활동	조건	인센티브
4.24 배터리 전기차(B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PHEV), 하이브리드 전기차(HEV) 및 BEV 플랫폼 제조	1. 프로젝트는 최소 BEV 및/또는 BEV 플랫폼으로 구성된 패키지 계획으로 제안되어야 한다. BEV 제조는 자체 또는 다른 생산자의 프로젝트여야 하며, 기계 수입 및 설치 계획, 1~3년 내 EV 및/또는 BEV 플랫폼 생산 계획, 부품 생산 또는 조달 계획, 전기 충전소 개발 계획(BEV 생산에만 해당), 폐배터리 운영 계획, 태국인 51% 이상의 지분을 가진 태국 내 원료 또는 부품 공급망 개발 계획과 해당 업체에 대한 기술 교육과 기술 지원 계획이 있어야 한다. 2. 태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는 다음과 같은 표준과 사양을 갖추어야 한다. 2.1 UN R100에 따른 전력 전송 시스템의 안전 표준 2.2 최소 ABS 및 ESC가 있는 능동 안전 표준(UN R13HW/ABS 및 ESC) 2.3 전면 및 측면 충돌로 사고가 일어날 경우 차량 탑승자 보호 기준(UN R94 및 UN R95) 2.4 오염 물질 기준 Euro 5 이상(UN R83)(HEV와 PHEV만 해당)	

활동	조건	인센티브
	2.5 태국산업표준원(Thai Industrial Standards Institute) 및 태국국토교통국(Department of Land Transport) 등의 유관 기관이 규정한 기타 표준과 사양 BEV 플랫폼의 경우, 전면 및 측면 충돌로 사고가 일어날 경우 차량 탑승자 보호 기준(UN R94 및 UN R95) 등과 같이 관련이 없는 제품의 기준에 대해서는 예외를 둔다. 3. 플랫폼은 에너지 저장 시스템, 충전 모듈, 전후방 액슬 모듈을 갖추어야 한다. 4. 승인된 전기차 및/또는 BEV 플랫폼, 전기 배터리(모듈 생산공정으로 시작해야 함)는 투자 촉진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년 내에 생산을 시작해야 한다. 5. 3개의 주요 부품(트랙션 모터,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드라이브 컨트롤 유닛(DCU)) 중 최소 한 가지는 전기차 및/또는 BEV 플랫폼 생산 시작일로부터 3년 내 추가적으로 생산해야 한다. 6. HEV와 PHEV의 경우, 활동(프로젝트) 카테고리 4.8.3(전기차 부품 및 장비의 제조)에 따라 전기차 제조 시작일로부터 3년 내 2가지 이상의 추가 부품을 생산해야 한다. 7.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계 수입 기간에 대한 연장은 허가되지 않는다. 8. BEV 및/또는 BEV 플랫폼 제조, 주요 부품(전기 배터리, 트랙션 모터, BMS, DCU)을 포함한 프로젝트 패키지의 투자금(토지금액과 운영 경비 제외)이 프로젝트 및 공급업체를 합하여 50억 바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활동	조건	인센티브
	- PHEV 제조 - BEV 및 BEV 플랫폼 제조 해당 프로젝트는 기술혁신의 연구개발에 따른 국가 경쟁력 향상 및/또는 특정 규정에 따라 첨단 기술 훈련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다.	A4 A2
	9. BEV 및/또는 BEV 플랫폼 제조, 주요 부품(전기 배터리, 트랙션 모터, BMS, DCU)을 포함한 프로젝트 패키지의 투자금(토지금액과 운영 경비 제외)이 프로젝트 및 공급업체를 합하여 50억 바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 PHEV 제조 - BEV 및 BEV 플랫폼 제조 다음에 해당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받아볼 수 있다. (1) BEV 및/또는 BEV 플랫폼 제조를 2022년에 시작할 경우, 법인세 면제 혜택 기간이 2년 추가된다. (2) BEV 및/또는 BEV 플랫폼의 주요 부품(전기 배터리 제외)을 전기차 및/또는 BEV플랫폼 제조 시작일로부터 3년 내에 기본 규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생산한다면, 법인세 면제 혜택 기간이 부품당 1년씩 추가된다. (3) 제조 시작일로부터 3년 이내의 어느 해에 BEV 및/또는 BEV 플랫폼의 실제 연간 생산이 10,000대(단위) 이상이라면 법인세 면제 혜택 기간이 1년 추가된다. (4) 승인된 프로젝트는 기술혁신의 연구개발에 따른 국가 경쟁력 향상 및/또는 특정 규정에 따른 첨단 기술 훈련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다.	A4 A4
	10. 산업지역 개발에 관한 메리트 혜택은 추가적으로 부여되지 않는다.	
	11. 에코 자동차 생산으로 촉진을 받은 프로젝트는	

활동	조건	인센티브
	국제표준 에코 자동차의 실제 생산량만큼 모든 종류의 전기차 대수에 포함할 수 있다. 태국 국내 시장을 위해 생산된 차량은 에코카 제조를 위한 국제표준에 따라 환경 분야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4.26 전기 삼륜차(Battery Electric Tricycle) 전기 삼륜차 플랫폼(Battery Electric Tricycle Platform) 제조	1. 프로젝트는 전기 삼륜차(Battery Electric Tricycle 및/또는 전기 삼륜차 플랫폼(Battery Electric Tricycle Platform)으로 구성된 패키지 계획으로 제안되어야 한다. 전기 배터리 제조는 자체 또는 다른 생산자의 프로젝트여야 하며, 기계 수입 및 설치 계획, 전기 충전소 개발 계획(전기 삼륜차 생산에만 해당), 1~3년 내 전기 삼륜차 및/또는 전기 삼륜차 플랫폼 생산 계획, 부품 생산 또는 조달 계획 폐배터리 운영 계획, 태국인 51% 이상의 지분을 가진 태국 내 원료 또는 부품 공급망 개발 계획과 해당 업체에 대한 기술 교육과 기술 지원 계획이 있어야 한다. 2. 플랫폼은 에너지 저장 시스템, 충전 모듈, 전후방 액슬 모듈을 갖추어야 한다. 3. 전기 삼륜차(Battery Electric Tricycle) 및/또는 전기 삼륜차 플랫폼(Battery Electric Tricycle Platform), 그리고 전기 배터리 생산은 투자 촉진증 발급일로부터 3년 내 이루어져야 한다. 4. 태국에 판매되는 전기 삼륜차(Battery Electric Tricycle)와 전기 삼륜차 플랫폼(Battery Electric Tricycle Platform)은 다음의 표준과 사양을 갖추어야만 한다. 4.1 UN R136에 따른 전력전송의 안전 표준 4.2 태국산업표준원(Thai Industrial Standards Institute) 및 태국국토교통국(Department of Land Transport) 등의 유관 기관이 규정한 기타 표준과 사양 5.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계 수입 기간에	A4

활동	조건	인센티브
	대한 연장은 허가되지 않는다. 6. 추가 혜택 6.1 투자촉진증 발급일로부터 3년 내에 모듈 생산공정으로 전기 배터리 생산을 시작할 경우, 법인세 면제 혜택 기간이 1년 더 부여된다. 6.2 투자촉진증 발급일로부터 3년 내에 트랙션 모터,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드라이브 컨트롤 유닛(DCU)과 같은 주요 부품을 추가적으로 생산할 경우, 법인세 면제 혜택 기간이 부품당 1년 더 부여된다. 6.3 해당 프로젝트는 기술혁신의 연구개발에 따른 국가 경쟁력 향상 및/또는 특정 규정에 따른 첨단 기술 훈련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다. 7. 산업지역 개발에 관한 메리트 혜택은 추가적으로 부여되지 않는다.	
4.27 전기 버스/트럭 및 전기버스/트럭의 플랫폼 제조	1. 프로젝트는 전기 버스(Battery Electric Bus)/전기 트럭(Battery Electric Truck) 및/또는 전기 버스/전기 트럭 플랫폼으로 구성된 패키지 계획으로 제안되어야 한다. 전기 배터리 제조는 자체 또는 다른 생산자의 프로젝트여야 하며, 기계 수입 및 설치 계획, 1~3년 내 전기 버스와 전기 트럭 및/또는 전기 버스나 전기 트럭의 플랫폼 생산 계획, 부품 생산 또는 조달 계획, 전기 충전소 개발 계획(전기 버스와 전기 트럭 생산에만 해당), 폐배터리 운영 계획, 태국인 51% 이상의 지분을 가진 태국 내 원료 또는 부품 공급망 개발 계획과 해당 업체에 대한 기술 교육과 기술 지원 계획이 있어야 한다. 2. 플랫폼은 에너지 저장 시스템, 충전 모듈, 전후방 액슬 모듈을 갖추어야 한다. 3. 전기 버스와 트럭, 전기 버스 또는 전기 트럭 플랫폼, 그리고 전기 배터리 생산은 투자촉진증	A4

활동	조건	인센티브
	발급일로부터 3년 내 이루어져야 한다.	
	4. 태국에 판매되는 전기 버스나 전기 트럭, 전기 버스/트럭 플랫폼은 다음의 표준과 사양을 갖추어야만 한다. 4.1 UN R100에 따른 전력전송의 안전 표준 4.2 태국산업표준원(Thai Industrial Standards Institute) 및 태국국토교통국(Department of Land Transport) 등의 유관 기관이 규정한 기타 표준과 사양 5.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계 수입 기간에 대한 연장은 허가되지 않는다. 6. 추가 혜택 6.1 투자촉진증 발급일로부터 3년 내에 모듈 생산공정으로 전기 배터리 제조를 시작할 경우, 법인세 면제 혜택 기간이 1년 더 부여된다. 6.2 투자촉진증 발급일로부터 3년 내에 트랙션 모터,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드라이브 컨트롤 유닛(DCU)과 같은 주요 부품을 추가적으로 생산할 경우, 법인세 면제 혜택 기간이 부품당 1년 더 부여된다. 6.3 해당 프로젝트는 기술혁신의 연구개발에 따른 국가 경쟁력 향상 및/또는 특정 규정에 따른 첨단 기술 훈련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다. 7. 산업지역 개발에 관한 메리트 혜택은 추가적으로 부여되지 않는다.	

2. 2014년 12월 3일자 투자위원회 고시 제2/2557호에 첨부된 Section 6에 다음의 활동들을 추가하며, 특정 활동, 조건 및 인센티브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활동	조건	인센티브
4.28 전기 자전거 제조(E-BIKE)	1. 프로젝트는 (1) 전기 자전거 제조 프로젝트 (2) 전기 배터리 제조 프로젝트(자체 또는 다른 생산자의 프로젝트) (3) 폐배터리 운영 계획을	A4

활동	조건	인센티브
	모두 포함하는 패키지를 제안해야 한다.	
	2. 투자촉진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전기 자전거와 전기 배터리를 생산해야 한다. 3. 프로젝트의 전기 자전거 프레임은 알루미늄 합금, 크롬-몰리브덴 합금강(크롬 몰리), 티타늄 합금 및 탄소 섬유 등과 같은 가벼운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4. 해당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전기 자전거는 EN15194 표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것을 이행해야 한다. 5. 전기 자전거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친환경 기술이어야 한다. 6. 일반 자전거와 전기 자전거를 같은 프로젝트에서 생산할 수 있다. 단, 일반 자전거 생산은 법인세 혜택을 받아볼 수 없다. 7.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계 수입 기간에 대한 연장은 허가되지 않는다. 8. 추가 혜택 8.1 투자촉진증 발급일로부터 3년 내 트랙션 모터를 생산할 경우, 법인세 면제 혜택 기간이 1년 더 부여된다. 8.2 투자촉진증 발급일로부터 3년 내 가벼운 소재로 전기 자전거 프레임을 생산할 경우, 법인세 면제 기간 혜택이 1년 더 부여된다. 8.3 해당 프로젝트는 기술혁신의 연구개발에 따른 국가 경쟁력 향상 및/또는 특정 규정에 따른 첨단 기술 훈련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다. 9. 산업지역 개발에 관한 메리트 혜택은 추가적으로 부여되지 않는다.	

이 고시는 2021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고시일 2021년 11월 17일

쁘라윛 짬오차 장군(General Prayut Chan-o-cha)

(Prayut Chan-o-cha)

총리

투자위원회 의장